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국	1

(2015. 9. 1)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행정국]

1. 안건명

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국)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년 8월 21일(금)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5년 8월 25일(화)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2015.6.4. 법률 제12738호) 제130조

나. 「지방재정법」 (2015.5.13. 법률 제13283호) 제45조

[검토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행정국]

1. 예산규모

가. 마포구(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82,893,864	465,716,810	17,177,054	36.88
일반회계	413,949,384	403,666,782	10,282,602	2.55
특별회계	68,944,480	62,050,028	6,894,452	11.11

나. 안전행정국(세입) : 해당사항 없음

다. 안전행정국(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23,378,545	123,325,159	53,386	0.04	
일 반 회 계	총무과	94,478,996	94,599,731	△120,735	△0.13
	자치행정과	9,283,305	9,265,226	18,079	0.20
	문화관광과	4,312,095	4,245,754	66,341	1.56
	민원여권과	723,676	723,676	0	0
	전산정보과	2,471,018	2,462,210	8,808	0.36
	생활체육과	12,109,455	12,028,562	80,893	0.67

라. 안전행정국(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특별회계	949,000	0	949,000	100.0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생활 체육과	마포구민체육센터건물 에너지효율화 구축사업	49,000	0	49,000
	01)시설비	49,000	0	49,000
	1)마포구민체육센터 에너지구축사업(태양광)	49,000	0	49,000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민편익시설 건립	900,000	0	900,000
	01)시설비	900,000	0	900,000
	1)타당성 조사용역 1)기본 및 실시설계비	20,000 880,000	0 0	20,000 880,000

2.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총무과	인건비	388,125	508,860	△120,735
	01)보수	388,125	508,860	△120,735
	1)사회복지전담공무원(순증)보수	275,625	393,210	△117,585
	1)사회복지전담공무원(국민중심)맞춤보수	112,500	115,650	△3,150
자 치 행정과	반환금 기타	18,079	0	18,079
	01)국고보조금반환금	9,179	0	9,179
	1)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00	0	100
	1)민방위 교육훈련	2,252	0	2,252
	1)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	2,470	0	2,470
	1)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4,357	0	4,357
	02)시·도비보조금반환금	8,900	0	8,900
	1)민방위 교육훈련	2,628	0	2,628
	1)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136	0	136
	1)구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20	0	20
1)자치회관운영 활성화	222	0	222	
1)연남글로벌리지센터 운영	5,894	0	5,894	
문 화 관광과	업무추진비	0	1,000	△1,000
	03)시책업무추진비	0	1,000	△1,000
	1)도심 속 도보관광 시책업무추진비	0	1,000	△1,000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문 화 관 광 과	민간이전	0	20,000	△20,000
	02)민간경상사업보조	0	20,000	△20,000
	1)도심 속 도보관광 시책업무추진비	0	20,000	△20,000
	반환금 기타	87,341	0	87,341
	01)국고보조금반환금	58,507	0	58,507
	1)음악창작공간조성사업(이월)집행잔액	50,506	0	50,506
	1)도심속도보관광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8,001	0	8,001
	02)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834	0	28,834
	1)2012년 참여문화공간 프로그램지원사업 집행잔액	301	0	301
	1)마포문화원 육성지원 사업 집행잔액	9,888	0	9,888
	1)시지정문화재 방재시설(소화기)구 매설치사업 집행잔액	404	0	404
	1)시지정문화재(망원정)보수공사사 업 집행잔액	18,161	0	18,161
	1)지역특성 문화사업 집행잔액	80	0	80
전 산 정 보 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750	0	8,750
	02)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750	0	8,750
	1)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지킴-e) 노후서버 교체	8,750	0	8,750
	반환금 기타	58	0	58
	01)국고보조금반환금	58	0	58
	1)2014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 원국고보조금 이자액 반납	58	0	58
생 활 체 육 과	반환금 기타	80,893	0	80,893
	02)시·도비보조금반환금	80,893	0	80,893
	1)장애인 및 노인전용 체육시설 조성 사업 반환금	53,128	0	53,128
	1)난지천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 반환금	1,380	0	1,380
1)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반환금	26,385	0	26,385	

3. 간주처리 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간주처리액	간주 회차	간주처리일
	안전행정국 : 32건	2,859,805		
총무과	소 계	72,888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50,000	7	3월 11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0,888	10	4월 1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	2,000	13	5월 15일
자치 행정과	소계	674,927		
	연남글로벌빌리지 센터 운영	48,200	1	1월 16일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마을아!같이살자!) 사업	150,000	6	3월 2일
	2015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2,500	6	3월 2일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사업	30,000	8	3월 31일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사업	1,000	8	3월 31일
	연남글로벌빌리지 센터 운영(2분기)	41,670	9	4월 1일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지원	5,000	10	4월 10일
	우리마을 지원사업	72,701	11	4월 20일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원	50,000	11	4월 20일
	공유촉진사업	6,125	11	4월 20일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자산취득비 지원	1,100	12	5월 1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사업	100,000	14	5월 29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20,000	15	6월 12일
	자치회관과 도농교류사업 지원	3,500	15	6월 12일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3,625	17	6월 22일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모임지원사업	13,900	17	6월 22일
	자치회관 운영지원 및 활성화	20,966	18	6월 30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지원	20,000	19	7월 9일
	우리마을 지원사업	32,470	19	7월 9일
연남글로벌빌리지 센터 운영	49,670	19	7월 9일	

부서명	사 업 명	간주처리액	간주회차	간주처리일	
	'이웃만들기 지원' 공모사업 추진 사무운영비	2,500	20	7월 20일	
문화 관광과	소계	325,990			
	문화재 방법방재시설 설치사업	103,000	7	3월 11일	
	지역특성 문화사업	60,000	8	3월 31일	
	3년차 마을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지원사업	20,000	14	5월 29일	
	문화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23,000	15	6월 12일
	관광과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주민자율형)공간지원 사업	19,990	15	6월 12일
전산 정보과	소계	80,000			
	시 주민참여예산사업(CCTV 설치)	80,000	12	5월 1일	
생활 체육과	소계	1,706,000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1,700,000	14	5월 29일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6,000	16	6월 15일	

[검토결과]

1. 예산현황

-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657억 1,681만원에 20차에 걸쳐 간주처리 된 4,036억 6,678만 2천원 포함된 171억 7,705만 4천원이 증가(일반회계는 102억 8,260만 2천원, 특별회계는 68억 9,445만 2천원)하여 총 예산은 4,828억 9,386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 약 25.5%인 1,233억 7,854만 5천원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임.
-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없으며,
-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233억 7,854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233억 2,515만 9천원 대비 0.04%에 해당

하는 5,338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총예산 4,657억 1,681만원의 0.01%에 해당하는 규모임.

2.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 현황

-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예산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945억 9,973만 1천원에 1억 2,073만 5천원이 감소한 944억 7,899만 6천원이 되겠으며,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92억 6,522만 6천원에 1,807만 9천원이 증가한 92억 8,330만 5천원이 되겠으며,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 42억 4,575만 4천원에 6,634만 1천원이 증가한 43억 1,209억 5천원이 되겠으며, 민원여권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액 24억 6,221만원에 880만 8천원이 증가한 24억 7,101만 8천원이 되겠으며,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액 120억 2,856만 2천원에 8,089만 3천원이 증가한 121억 9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 내용>

- 총무과에서는 예산액 944억 7,899만 6천원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순증)보수에 따른 1억 1,758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국민중심)맞춤보수에 따른 315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945억 9,973만 1천원의 0.13%에 해당하는 1억 2,07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액 92억 8,330만 5천원으로 1)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17만 9천원을 편성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1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225만 2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 및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682만 7천원으로 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90만원을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원금 276만 4천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2만원, 자치회관운영 활성화 22만 2천원, 연남글로벌리지센터 운영비 589만 4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92억 6,522만 6천원의 0.2%에 해당하는 1,80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액 43억 1,209억 5천원으로 1) 도심 속 도보관광 시책 업무추진비 반납 1백만 원, 2) 도심 속 도보관광 시책업무추진비 반납 2천만 원

을 감액 편성하였고, 3)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850만 7천원을 편성하여 음악창작공간조성사업(이월)집행 잔액 5,050만 6천원, 도심속도보관광 활성화 사업 집행 잔액 8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83만 4천원을 편성하여 2012년 참여문화공간 프로그램지원사업 집행 잔액 30만 1천원, 마포문화원 육성지원 사업 집행 잔액 988만 9천원, 시지정문화재 방재시설(소화기)구매설치 사업 및 시지정문화재(망원정)보수공사사업 집행 잔액 1,856만 5천원 등 기정예산액 42억 4,575만 4천원의 1.56%에 해당하는 6,63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도심속 도보관광 활성화 사업 >

1. 사업개요 : 민간단체 사업보조를 통해 도심속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마포난지 생명길의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15. 1. 1. - 2019. 12. 31.
3. 총사업비 : 1억 500만원
4. 사업내용 :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난지생명길 걷기대회 및 안내체계 확충, 홍보 및 관리 등
5. 추진근거 : 마포난지 생명길, 2013년 문체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지정
6. 추진사항
 - 2014. 2월 : 마포난지생명길 안내체계 구축
 - 2014. 3월 : 마포난지생명길 길 트임
 - 2015. 1월 : 민간단체 사업보조 업무협약
 - 2015. 5월 : 마포난지생명길 걷기대회 추진
 - 2015. 8월-11월 : 마포난지생명길 달빛걷기 추진
 - 2015. 9월 : 마포난지생명길 걷기행사 추진
 - 연 중 : 마포난지생명길 스탬프 투어 실시

○ 민원여권과는 해당사항이 없음.

- 전산정보과는 예산액 24억 7,101만 8천원으로 1)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지킴-e)노후서버 교체 875만원, 2) 2014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국고보조금 이자액 반납금 5만 8천원 등 기정예산액 24억 6,221만원의 0.36%에 해당하는 88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생활체육과는 예산액 121억 945만 5천원으로 사·도비보조금반환금 8,089만 3천원을 편성하여 1)장애인 및 노인전용 체육시설 조성사업 반환금 5,312만 8천원, 2) 난지천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 반환금 138만원, 3)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반환금 2,638만 5천원 등 기정예산액 120억 2,856만 2천원의 0.67%에 해당하는 8,08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4. 검토의견

-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총무과 1억 2,073만 5천원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확정 내시에 따른 인건비를 반납하기 위해 편성, 자치행정과 국·시비 1,807만 9천원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및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문화관광과 6,634만 1천원은 업무추진비 및 민간이전금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 도심속 도보관광 활성화사업 중단에 따른 집행 잔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734만 1천원은 음악창작공간 조성사업 및 도심속 도보관광 활성화 사업외 5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 전산정보과 880만 8천원은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지킴-e) 하드웨어 도입비 875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만8천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2 도입 리스료 보조금 이자액 등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편성되었고, 생활체육과 8,089만 3천원은 장애인 및 노인전용시설 조성사업 집행 잔액 5,312만 8천원, 난지천 인조잔디 관리 반환금 138만원 그리고 마포

구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시설부대비는 공사장 주변 도로공사 및 공공비용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 잔액 2,638만 5천원을 2015년도에 반환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15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 4,900만원으로 마포구민체육센터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구축(0.25KW×52개)을 위해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2014년도 예산결산 시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절감과 낙찰잔액 등 집행 잔액은 53억 8,143만원으로 예산편성액의 4.1%가 불용되었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26억 5,486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226만 148만 3천원의 0.04%에 해당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편성이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와 편성된 예산을 경정할 이유가 발생했을 때,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에는 추경편성 전이라도 간주처리로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경우 인센티브 사업이 많고 예산부담을 수반하는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무리한 인센티브 신청사업을 지양하고 우리 구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한 인센티브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부족으로 예비비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추경예산 편성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최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의 확대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기적으로 필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는 바, 사업예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산출기초에 대한 검토와 예산 우선 순위에서 정책적인 예산보다도 주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예산 등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추경예산에 이러한 사업예산이 상정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간주예산으로 처리되고 있는 국·시비보조금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일단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국·시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예산도 매칭사업으로 편성해야 하는 만큼 우리 구 예산 편성도 해야 하는 만큼 향후 국·시비 등 보조금 사업신청 시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더불어 우리 구 예산 감당능력이 있는 지 등 보다 철저한 예산분석을 통하여 예산 부족 발생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시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신청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